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0. 22)

1. 심사 경과

가. 2004. 10. 4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10. 15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 39호)

다. 2004. 10. 22 :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기획담당관 최학림)

가. 제안 이유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과 괴리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함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함
 - 기획담당관 ⇒ 위원중에서 호선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 민자유치사업 ⇒ 민간투자사업

다. 관계 법령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31)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맞게 개정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 가결 의견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